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23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최민희 · 조인철 · 김영환
홍기원 · 이훈기 · 이연희
오기형 · 권향엽 · 이주희
박민규 · 한민수 · 김 현
노종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계권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76조의6 신설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와 구분하여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이하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및 그 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계방송권자등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실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중계방송권자등은 국민관심행사등 및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

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협상단이 구성될 경우 비용 또는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의3제1항 중 “제76조제3항의”를 “제76조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제76조제4항에 따른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7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6(사전승인제도) ①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대한 국민 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온라인 중계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할 것
 2.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할 것
- ② 제1항의 사전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관심행사등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 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 를 <u>고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고시하여야 하고, 이와 구 분하여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 되는 행사(이하 “중대한 국민 관심행사”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u> ----- ----- ----- -----.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u>중계 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u>(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 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 ---- <u>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 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 기 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송 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및 그 대 리인</u> ----- -----.

<신 설>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계방송권자들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대한 국민관심 행사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중대한 국민관심 행사를 실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
----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⑥ -----제5항

-----.

⑦ 중계방송권자들은 국민관심 행사등 및 중대한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第76條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신설>

는 공동협상단이 구성될 경우 비용 또는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第76條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
-제76조의------

-----.

1. ~ 4. (현행과 같음)

5.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제76조제4항에 따른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의6(사전승인제도) ①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온라인 중계를 포함한 보편

	<u>적 방송수단을 확보할 것</u> <u>2.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u> <u>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보편적</u> <u>방송수단을 확보할 것</u> <u>② 제1항의 사전승인에 필요한</u> <u>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u> <u>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u> <u>규칙으로 정한다.</u>
--	---